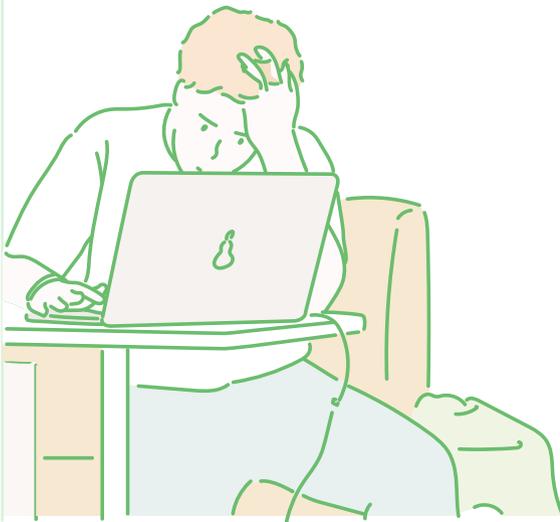


중대재해 처벌 대상 직업성질병 예방 TIP



박정선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석좌교수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해 준비한 내용이지만, 중대규모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해도 당연히 좋은 내용이다. 또 “큰일부터 해결하라. 그러면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데일 카네기의 명언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발생을 막으려 예방 활동을 하다 보면 소소한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이나 만성중독성 질환은 저절로 예방이 될 거라 믿는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대기업들조차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그나마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어 당장 닥친 일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2년이 지나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의무도 없어 사업장 내부에는 아무도 안전보건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해 줄 사람이 없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업무상 재해)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용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 수칙만 잘 따르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 너무 복잡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처벌 대상 직업성 질병과 사망재해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뇌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쉽고 간결하게 간추려 보았으며, 아직 막연히 걱정만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본문과는 별도로 첨부하였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재해 예방]

1.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지킨다.
2. 사업주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배치전 건강진단 및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독려하고 확인한다.
3.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 고혈압이나 당뇨 기질환자(약 복용자)임을 숨기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교육을 한다.
4.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노동자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 송부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질병유소견자(D2)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 수칙만 잘 따르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5.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의 사후관리 의견에 따라 필요시 해당 노동자에게 작업장소, 작업 전환, 작업시간의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6.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개인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에 나와 있는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치를 활용하여 최고위험군(또는 혈압과 혈당 조절이 안되는 고위험군)인 노동자는 야간작업이나 연장 근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질병 관리가 잘 되어 발병위험도가 낮아지면 주치의의 소견서(업무적합성평가 소견서)를 받아 다시 투입할 수 있으며, 소견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7. 사업주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물 복용자가 약물 처방과 정기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혈압이나 당뇨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해야 한다.
8.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 요인인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잘 지도하여 개선시키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급성중독증 예방]

1. 사업주는 제일 먼저 [별첨자료 1]에 열거되어 있는 24가지 유해인자 중 어느 한 가지 유해인자이라도 노동자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노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 재해의 대상사업장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
2. [별첨자료 1]에 열거되어 있는 직업성 질병 중 1번에서 13번까지는 유해가스를 다량 흡입하거나 유해인자에 전신이 폭로되어 발생하는 전형적인 급성중독성 질병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요인인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잘 지도하여
개선시키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성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는 노동자들이 평소에 방독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착용하거나 피폭 방지를 위한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작업 시작 전과 작업 도중에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과 작업 도중에 유해가스가 누출되는 곳은 없는지, 국소배기장치는 잘 가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점검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노동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가스의 유해성과 증독 예방 방법을 잘 이해하도록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④ 특히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특별히 챙겨서 교육하고 작업안전수칙을 잘 실천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3. [별첨자료 1]에 열거되어 있는 직업성 질병 중 14번에서 16번은 해당 물질에 민감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중독질환이므로 위 2번에 열거한 조치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진 배치 전 건강진단과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에 특히 신경을 써서 알레르기성 증독 증상이 있는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별첨자료 1]에 열거되어 있는 직업성 질병 중 17번에서 23번까지는 특정 직업(예: 보건직종 종사자, 비파괴작업노동자, 잠수작업자, 육가공업자 등)이나 특수한 환경(습지 작업, 에어컨 사용, 밀폐공간작업)에서만 노출되는 특정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이므로 사업주는 앞의 직업병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사업주는 해당 유해위험작업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할 특별한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장 이상 기압, 제6장 온도·습도, 제7장 방사선, 제8장 병원체, 제10장 밀폐공간 등)과 안전보건공단 코샤 가이드부터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
 - ② 사업주는 해당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잘 아는 직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 ③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유해위험작업 시 노동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한다.

[열중증(직업성질병 24번) 예방]

- 1. 사업주는 열중증 예방을 위해 고열 작업을 하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열중증 예방을 위한 기본 환경(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시원한 휴식 장소 제공 등)을 갖춰주고, 폭염특보나 폭염주의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 2. 사업주는 열중증 예방을 위해 고열 작업을 처음 시작하는 노동자나 한동안 고열 작업을 쉬었던 노동자에게는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의 고온 순화 과정을 거치게 하여 고온/고열에 적응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특별히
챙겨서 교육하고
작업안전수칙을 잘
실천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열중증 예방을 위해 고열 작업에 하루 6시간, 일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여 투입하면 안 된다.
4. 사업주는 열중증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 컨디션이 나쁜 노동자는 작업에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컨디션 체크표* ([별첨자료 2] 참조)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컨디션 체크표에는,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지, 전날 늦게까지 과음하지 않았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 설사를 하지 않는지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5.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는 노동자가 있는지 관리 감독자와 동료 노동자가 수시로 살피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런 노동자를 발견하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의식이 없거나 열른 회복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3. 고용노동부.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2021. 11
4.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2021

[별첨자료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노동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열증증에 관한 건강상태 점검표 (예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점검표입니다. 관리감독자나 조장은 조회 시에 1~6번까지의 기왕력이 있는 근로자가 7~11까지의 컨디션 상태라면, 폭염 경보나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가급적 작업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작업중 12~18번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관리감독자나 조장에게 보고하도록 조회 시 근로자들에게 당부하여야 합니다. 또 관리감독자나 조장은 오전과 오후 작업중 휴식 시에 12~18번의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열증증 위험요인 점검				확인일				년 월 일				
최초 작업자	기왕력	1	고령자 (65세 이상)	유 · 무	4	비만				유 · 무		
		2	심근경색 · 협심증	유 · 무	5	기타 ()				유 · 무		
		3	고혈압	유 · 무	6	열증증 과거력				유 · 무		
	중전의 작업장소, 내용											
매일 자가 점검 (월/일)				/	/	/	/	/	/	/	/	
조회시	컨디션	7	감기에 걸려있다									
		8	설사를 하고 있다									
		9	술에서 덜 깬 상태다									
		10	아침을 먹지 않았다									
		11	수면부족상태다									
휴식시	증증도 I	증상의 유무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12	현기증, 기립성 현기증									
		13	땀이 멈추지 않는다									
		14	땀이 멈추지 않는다									
	조회시 II	15	머리가 쿡쿡 쑤시며 아프다									
		16	토할 것 같다									
		17	몸이 나른하다									
		18	판단력 · 집중력 저하									

참고문헌: 박정선, 김양호, 박종식, 정인성. 유해작업 휴식 등 근로조건 개선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시행방안 마련 연구 (옥외작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별첨자료 3] 질병으로 인한 사망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문헌 3에서 인용)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사망은 부상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중대 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한함.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종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종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코결굴[부비동(副鼻洞)]암

바. 폴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폴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결굴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별첨자료 5]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 (* 중대산업재해 규정만 발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공공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 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 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 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제11조 생략

제12조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생략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제11조 생략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